익명신고처리지침

제정 2019. 3. 20.

개정 2019. 9. 16.

개정 2021. 3. 03.

개정 2021. 9. 09.

개정 2023. 8. 28.

[감찰부 042-600-828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신고 및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익명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제보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운영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익명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16.>

-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9.9.16.>
-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9.9.16.>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신설 2019.9.16.>
- ②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소관부서에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접수 및 처리하는 사항은 자체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8.28.>

제2조의2(적용범위의 제외) ①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신고 및 제보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 1. 신고일 기준 신고대상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성비위 경우에는 10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23.8.28.>
- 2. 신고내용이 공사의 정책에 반하거나 조직 내의 갈등, 내부동요 또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신설 2019.9.16.>
- 3. 비방, 험담, 욕설,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1.9.9.>
- 4. 단순 민원 및 불만사항,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 행위 신고, 개인 감정 신고의 경우 <개정 2021.9.9.>
- 5. 지나친 시간소요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설 2019.9.16.>
- 6.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노사 간 합의하여 시행하는 사항 <신설 2021.9.9.>
- 7.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영권(인사, 보수, 복지 등) 및 주관부서의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28.>
- 8. 신고내용이 수사, 조사 또는 감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23.8.28.>
- 9. 감사가 기각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신설 2021.9.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려할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9.>

제3조(기본원칙) 접수된 익명신고는 처리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또는 익명제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익명신고시스템 접근 권한은 담당자와 직상위자 이외에 공유를 금지한다. <개정 2019.9.16.>

제3조의2(익명신고인 신분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익명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익명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3.>
- ② 감사인은 피조사인에게 <서식 4>에 의거 익명신고인 관련 정보공유행위 및 익명신고인 추정· 색출 행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9.9.>
- ③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제4조(처리절차 및 기준) 감사부서장은 익명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등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9.9.16.>

- ①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 확인 등 처리에 착수한다. <개정 2019.9.16.>
 - 1. 신고서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개정 2019.9.16.>
 - 2. 목격자 또는 참고인이 있는 경우 <개정 2019.9.16.>
 - 3. 신고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19.9.16.>
- ②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확인 등 처리에 착수한다. <개정 2019.9.1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신고자에게 근거 자료를 7일(휴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여부를 다시 판단하며,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9.9.>
 - 1. 대상자를 실명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9.16.>
 -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육하원칙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9.16.>
 -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되거나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개정 2019.9.16.>
 - 4. (삭 제) <삭제 2019.9.16.>
 - 5. (삭 제) <삭제 2019.9.16.>
 - 6. (삭 제) <삭제 2019.9.16.>
- ④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자료 미제출 등 추가적인 협조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9.16.>
- ⑤ 감사부서장은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이 미미하거나, 계도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한 후 <서식 5>에 의거 약식으로 처분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1.9.9.>
- ⑥ 동일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직원에게는 상벌규정에 따른 신분상 '주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 ⑦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이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등이 더 용이하거나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송 받은 소관부서장은 처리 결과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휴무일 포함)에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9.>
- ⑧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그 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법령 및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거나 증거자료가 확보된 때에는 종결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제5조(신고처리사항 통보 기한) 접수된 익명신고를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60일(휴무일 포함)이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4조 제3항에 따라 조사하기로 한 경우는 추가로 근거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60일(휴무일 포함) 이내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경우 조사결과 통보예정 시기를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9.>

제6조(처리기록 관리) 익명신고처리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감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서식2) 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후 조치 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보고(서식3)후 익명신고관리대장(서식1)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6.>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9월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0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9월 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8월 28부터 시행한다.

익명신고 처리 판단기준

유형	내 용	정보 신뢰도	처리기준	비고
제1유형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신고)	신고내용에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함은 신고서에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비위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의미함)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1) 신고서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 또는 참고인이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한 경우	상당히 높음	조사 착수	
제2유형 (다소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신고)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강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로 단지 몇 가지의 사실 확인만으로 신고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비교적 높음	조사 착수	
제3유형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불명확한 신고)	1) 대상자를 실명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예시: ○지사 A과장, △반 직원) <신설 2023.8.28.>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육하원칙으로 적시되지 않은 경우 (예시: ① A과장의 업무태만 행위를 신고합니다. ② B부장이 C직원에게 부당업무지시한 행위를 신고합니다.) <신설 2023.8.28.>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되거나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개정 2023.8.28.> 4)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자료 미제출 등 추가적인 협조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23.8.28.>	보통	처리를 보류하고, 7일(휴무일 포함) 이내에 근거자료를 신고자에게 제출하 도록 요청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재판단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종결처리할 수있다.	
제4유형 (익명신고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	제2조의2(적용범위의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미출	원칙적으로 기각처리 - 단, 해당부서에 이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송	

익명신고 관리대장

년도			
	제 보 내 용	처 리 결 과	완료여부
(연번)	일시 :		
	제목 : 내용 :		
	내용 :		
		I .	

			감 사
담 당	부 장	실 장	

등록	
면오	

익명신고 접수보고

접수	-번호	신고일시
신고	1유형	신고매체
신고	·대상	발생빈도
		신 고 개 요
		증거자료 등 첨부사항
		후 속 조 치 방 안
직 접	처리방 법	부 수 신 처
직접처리	기타사 항	부 수 신 서 어 조치기 한

<서식 3> <개정 2019.9.16.>

			감 사
담 당	부 장	실 장	

등록	
빈오	

익명신고 조치결과 보고

접수번호		신고일시	
신고유형		신고매체	
신고대상		조치방법	
	신 고	개 요	
	조 치	내용	
	회 신 내	용(안)	

익명신고인 신분 보호 서약서

본인 _____은(는) 익명신고처리지침 제3조의2에 의거 본 조사와 관련된 익명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유하거나 익명신고인임을 짐작 또는 추정 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 이후 익명신고인을 추정·또는 색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 귀하

경 고(주 의) 장

소	속	:

직 위:

성 명:

귀하는 _____ 건으로 익명 신고 접수되어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지적됨에 따라 "경고 (주의)" 처분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 생 일 자	지 적 내 용
	•

년 월 일

감사실장 (인)